

국제 환경규제의 동향과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규제의 흐름



문 영 호

〈산업기술정보원 환경·건설팀 책임연구원〉

최근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나름의 지구 규모의 환경보전과 자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개별적인 환경조치들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외 의존적인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리우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 WTO, OECD를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들에서의 무역-환경연계 논의 등이 있다. 또 특정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는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다국적 환경규제 움직임 이외에 특별 환경규제도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코라벨, 기술 규제, 폐기물 및 용기와 관련된 환경요건, 경고라벨 부착, 그밖에도 다양한 공정 및 생산방식 관련규제 등과 같은 개별국가의 일방적 조치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경영체제 등을 규격화하

■ 目 次 ■

1. 국제환경규제의 흐름
2. 지속개발위원회와 『의제21』
3. 국제환경협약
4. 환경과 연계된 국제적 무역조치
5.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6. 주류업계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는 ISO 14000의 경우에도 환경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각종 국제 환경규제 조치들은 생산, 수출 및 소비, 폐기 등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정물질이나 성분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원료조달방식 및 공정과 적용기술을 제한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의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의제21」, 국제환경협약, 국제기구에 의한 논의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주류산업에 영향을 클 것으로 보여지는 국제환경협약,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조치, 에코라벨 및 ISO의 내용을 분석한다.

2 지속개발위원회와 「의제21」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는 스칸디나비아 수계의 산성화 문제 등과 같은 지역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UNCHE 이후에 선진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환경주무부처가 발족되었고 환경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UN내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1970~1980년에 걸쳐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런던뎀핑협약, 바젤협약, 비엔나협약 등의 국제 환경협약 등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국지적, 지역적 성격을 넘어서 지구적 환경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많은 경우 환경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개발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1982년 UNEP는 UNCHE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설립되어 Brundtland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환경보전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해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드디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고, 이로 인해 UNCED는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리우회담에서 100여국의 정상들은 사회·경제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자원의 보전·관리문제, 주요 그룹의 역할, 이행수단 등 모두 40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의제21」에 대해 합의하였다. 1992년 12월 개최된 제47차 UN총회에서 UNCED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UNCED의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였다. 이후 CSD는 작년 1998년 4월까지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리우환경선언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환경비용의 내부화 개념에 기초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무역과 지속개발의 상호 양립성,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등 향후 지구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에 있어 지침 역할을 할 지구환경보호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다. 「의제21」은 동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정책지침 및 향후 조치사항을 사회경제적 차원,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문제,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및 이행방안 등으로 대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의제21」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각 의제가 매우 세부적인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향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러한 사항을 그들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

감을 갖고 있다. 또 CSD는 「의제21」의 이행을 위한 핵심수단과 함께 유해폐기물, 담수, 인간 정주, 산림, 토지, 사막화 등 부문별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국제환경협약

WTO가 무역자유화라는 대 전제하에 무역과 환경의 상호 조화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런던뎀핑협약 등의 국제 환경협약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주요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개별 환경무역에 대해 다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및 조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환경협약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생산, 소비, 교역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국제환경협약은 모두 216개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37개에 가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협약의 지속적인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몬트리올의정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77년부터 세계기상기구 등과 협조하여 오존층의 변화동향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오존층 파괴로 인해 지구에 심각한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1985년에는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고, 1987년에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에는 규제 대상 물질의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규제 대상 물질의 교역도 금지하고 있다. 교역 금지 품목은 오존 파괴물질인 CFC, 할론, 사염화탄소 등을 포함하거나 제조시에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까지 규제하고 있다.

(2) 기후변화협약

1994년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수립 및 시행을 담고 있다.

본 협약은 선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1998년 11월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는 개도국 참여문제, 선진국 의무이행 등을 논의하였으나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로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세계11위(전체 1.8%)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 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1998년 12월에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협약을 분석하면, 개별국들

〈표 1〉 국제환경협약 현황

구 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 안 전	유해물질	기 타	계
채 택	12	15	86	50	13	11	29	216
가 입	5	-	12	7	6	1	6	37

의 노력으로는 본 협약의 목적인 온실가스 안정화가 힘들다고 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탄소세등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산업구조 특성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소비주류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이다. 수은, 카드뮴 등 47종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여 협약 비가입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국 간의 교역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수입국이 환경적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4) 런던뎀핑협약

런던협약 제20차 당사국회의가 지난 1998년 12월부터 5일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되었다.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투기 대상 폐기물 평가지침 채택 등 국제사회의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 노력이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의정서 이행과 관련, 외교통상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관련부처 대책반을 설치하여 의정서에 대한 가입검토, 의정서 이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의정서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런던뎀핑협약의 주요 내용은 슬러지 해양투기 규제 강화에 대비, 슬러지의 발생원별 발생량, 처리현황, 해양투기외의 대안, 재활용·재이용 방안 등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4. 환경과 연계된 국제적 무역조치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국제기구인 WTO, ISO 및 OECD 등을 통하여 환경관련 무역규제 또는 환경경영, 나아가서 생산방법 및 공정에 대한 규제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선진국이 대체로 그들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도입될 경우 환경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무역규제와 연계하려는 최근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 방향을 요약하면 선진국들은 환경을 목적으로 하여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청정한 방법과 오염적 방법을 불문하고 생산방법이나 공정의 차이를 이유로 국내의 제품간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동종제품의 개념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WTO/OECD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세기 동안 국제 무역 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가 1995년에 WTO 체제로 바뀌어지고 국제 무역질서가 실질적 자유화의 방향으로 급진전됨에 따라 국제 무역체제와 질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환경 보존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환경규제는 WTO 체제 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환경·무역협상, 즉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다자간 무역체제 밖에 두었던 무역과 환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 확산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하고,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여 다음의 10개 논의과제를 선정하였다.

-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무역조치와 국제 무역규범과의 관계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관련된 국내환경정책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 및 세금, 포장 및 상표부착등 상품요건과의 관계
-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 다자간 무역체제와 국제환경협약상의 분쟁조정 메카니즘의 관계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제한 문제
-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
- 서비스 교역과 환경
- 지적재산권 협정의 환경관련 조항
- 민간단체와의 관계 및 문서배포 관련 투명성 증진 방안

WTO에서의 환경·무역 연계논의의 주요 쟁점은 환경을 명목으로 한 무역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환경정책의 대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 및 국제 NGO(비

정부단체)들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 수단의 도입·사용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U, 개도국은 WTO에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국제 환경협약 등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기 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 무역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무역규제 조치가 효과적인 환경보호 수단이며, 국가간 공정경쟁의 보장 차원에서도 개도국의 '환경덤핑' 또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무임승차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개도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개도국에 대한 무역규제보다는 재정 및 기술지원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991년 무역환경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연구하도록 하여, 1995년 OECD 각료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OECD의 결정은 선진국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향후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에코라벨

〈표 2〉 주요국의 에코라벨 현황

국 가	제 도 명	국 가	제 도 명
독 일	Blue Angel	호 주	Environmental Choice
캐 나 다	Environmental Choice	한 국	환경마크
일 본	EcoMark	싱 가 폴	Green Mark Singapore
북 유 럽	White Swan	프 랑 스	NF-Environment
미 국	Green Seal	네델란드	Stichting Milieukeur
스 웨 덴	Good Environmental Choice	E U	European Flower

1998년 3월의 CTE위원회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선진국이 설치한 에코라벨이 원인이 되어 생화(Flower)의 수출이 감소한 경우를 보고하였다. 에코라벨은 광우병 파동과 홀몬을 투여한 소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에코라벨의 포맷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콜롬비아의 76사의 민간 수출업자조합에서는 ISO 14001과 유사한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꽃 재배시의 토양, 물, 식물위생, 연료 및 폐기물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적인 꽃 재배를 지도하여 오고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산의 꽃이 환경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콜롬비아 재배업자는 ISO 14001과 거의 같은 수준의 자체 규정에 의해 꽃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반하여 독일의 민간단체에서는 생화 재배의 전과정이 수입국의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처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환경기준의 차이로 인한 무역분쟁은 향후 다수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현재 에코라벨은 EU의 Eco-Label, 미국의 Green Seal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0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에코라벨은 대 선진국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에코라벨 적용대상 품목 및 부여 기준이 수입국의 환경우선순위 및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설정되므로 해외 생산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환경의식이 높은 선진국 소비자들에게는 에코라벨 자체가 제품의 구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에코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이

게 될 것이다.

(3) ISO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TC/207을 통하여 환경경영에 관련되는 국제인증규격을 마련하고 있다. ISO 9000시리즈로 불리는 '품질인증규격'에 대응되는 개념의 '환경인증규격'은 ISO 14000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기업조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체제를 평가, 감사하고 인증할 수 있는 국제환경보증규격이다.

동 시스템에서는 기업이 환경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환경방침, 목적 및 세부목표의 수립, 환경성능의 측정 및 내부감사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절차와 방법, 인증대상 상품선정 및 기준,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환경 용어의 사용요령, 환경심볼에 대한 각종 표시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제품수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ISO 14000시리즈는 ISO 9000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가 전혀 없고 준수 여부는 단순히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에코라벨 부문에 대해서는 에코라벨 및 선언 문구의 기준과 절차로 인해 외국 제품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ISO 14000시리즈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고, 선진국 소비자들일수록 환경상품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변화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 최근의 콜롬비아의 생화와 관련한 독일과의 무역분쟁에서도 나타났듯이 각국의 환경이나 무

역관련 법률에서 이 표준을 원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이 규격의 인증을 구매요건으로 요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4) 주요국의 환경관련 무역장벽 사례

환경보호가 은폐된 보호주의로 작용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이미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은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한 제품, 이를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용기, 동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과정을 거친 품목에 대한 경고 라벨 부착을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93)에 따라 오존층보호를 명분으로 1993년 5월부터 규제가 시행되었다.

또 EU에서는 이사회지침(94/62/EC)에 의거 1999년까지 중량기준 총 발생 포장폐기물의 50~65%를 수거·재생토록 하고, 포장재 또는

포장재 성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등) 함유량은 중량기준 10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포장시 EU 지침에 부합되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당한 기술과 비용부담이 수반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회수 불가능한 유리병 및 음료용기에 대해 환경세 부과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알콜 음료용기는 개당 0.5NOK, 와인 및 증류주는 2.5NOK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5.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 질서하의 환경문제는 WTO/CTE 내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서 보여주듯이 환경과 무역의 상호 규범적인 틀 속에서 큰 무리 없이 법리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 이슈로서의 환경문제는 WTO/CTE에서의 논의보다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표 3> 국제환경규제의 산업영향

단 계	협약 및 조치	주 요 내 용	관 련 산 업
원료조달	- 몬트리올의정서 - 바젤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 CFC등 특정물질 사용규제 - 유해폐기물 국경간 이동 - 생태계보전	- 전자, 정밀기기, 화학 - 철강, 제지 - 유전공학, 농축산
제조 및 유통	- 기후변화협약 - 기술규제(TBT) - 공정 및 생산방식규제(PPMs) - 탄소세, 에너지세	- 에너지사용규제 - 환경보전 위한 기술규제 - 공정상의 환경오염 규제 - 에너지가격상승	- 전 산업 - 전 산업 - 전 산업 - 에너지 다소비 산업
소 비	- 경고라벨부착 - 용기규제	- CFC 함유제품 소비규제 - 재활용 용이한 용기 사용	- 전자, 생활용품 - 음식료품
전 체	- 환경경영 국제규격 - 에코라벨제도	- 환경경영체제구축 - 환경친화제품의 소비장려	- 전 산업 - 전 산업

등 개별 국제 환경협약과 각국의 기업, 소비자의 점증하는 환경 욕구 증대와 ISO 14000, 에코라벨을 포함한 환경인증제도의 국제적 강화와 표준화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또 WTO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을 근거로 한 무역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에코라벨이나 국제표준에 의해 부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환경규제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주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 규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 탄소세 도입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에 매 10년마다 기온이 0.3°C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부터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중의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협약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국제 탄소세의 도입이 시행될 경우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협약에 따른 보고서나 각종 연구들의 분석에 의하면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본 협약의 근본 목적인 온실가스 안정화가 힘들다고 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동이행제나 국제탄소세 등의 도입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선진국 의무에 10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2%나 줄여야 한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1990) 등 5개국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도 에너지세

및 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미 EU는 원유환산 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도 탄소세가 부과되면 석유제품은 약40%, 화학제품은 10%, 유리제품은 5% 정도의 추가 생산원가 상승률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에서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는 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경세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류업체에서도 에너지 절감방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 노력을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기린맥주에서는 배출 원단위를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7%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201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뽀로맥주는 모두 6개의 공장 중에서 5개의 공장에 고효율 보일러를 도입하였고, 염기성 폐수처리의 도입에 따른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1997년에는 1990년 대비 10%의 연료 원단위를 감축하여 현재 46.1l/Kl을 실현하고 있다.

또 기린맥주 등에서는 코제너레이션발전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 중에서도 원단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소주업체 등은 지금부터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탄소세가 도입되면 주류업체는 업종에 따라 5~10%의 추가 생산원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폐기물의 해양투기

런던뎀평협약에서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투기대상 폐기물 평가지침 채택 등 국제사회의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 노력이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동 협약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 협약은 현재까지는 주로 방사능 함유 폐기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고농축 폐액이나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여 특히 고농축 폐액이나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정업체의 관심이 촉구된다.

(3) 에코라벨

TBT 협정하에 인지된 국별 환경기준은 350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규제 및 기준이 심각한 무역왜곡을 초래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점차 제품의 전과정평가(LCA)가 중요해짐에 따라 에코라벨은 점차 PPMs를 근거로 하게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PPMs 에코라벨은 수입국의 환경여건, 환경기술, 우선 순위 그리고 수입국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여 수출국 상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별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 EU집행위에 따르면 에코라벨 제도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코라벨을 부착한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게 변화하면서 꽃무늬 모양의 에코라벨을 부착한 기업 제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WTO의 TBT위원회에 업저버로 참가하고 있는 ISO가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 에코라벨의 국제표준을 검토하고 있다. TBT협정에서는 규격화, 표준화의 대상으로 ①제품 ②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③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4) ISO

일본의 주류업체들은 맥주 메이커 등을 중심으로 ISO 14000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사히, 삿쵸로 등 메이저 맥주회사를 중심으로 이미 ISO 14001을 획득하고 있다. 향후 ISO 14000시리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기업이상의 의미로 확대해

석될 공산이 큰 만큼 조속히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다. ISO 14000 규격은 주류업계 공동 차원에서 신속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하겠다.

(5) CFC 사용규제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CFC)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며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 스프레이 분사체 등 인간의 산업활동에 널리 쓰이고 있다. 1989년부터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는 구체적인 강제 규정으로 5종류의 CFC와 3종류의 할론가스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뒤 1990년 런던 2차 가입국회의에서 10종의 CFC와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등 12개의 규제대상 물질이 추가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에서는 41종의 물질이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총회에서 수혜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수요를 위한 규제물질의 소비금지를 10년간 유예하고 있다. 동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CFC를 함유한 제품이나 공정상에 CFC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규제는 받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CFC 관련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의 아사히맥주에서는 1998년도부터 나고야공장에 대해서 Non-CFC 공장을 실현하고, 향후 전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암모니아흡수식 냉장고를 도입하고 있다.

6. 주류업계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규제강화 주장과 개도국 등을 중심으로 한 원칙적인 찬성하에 유

에 및 점진적인 강화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규제가 각국의 산업에 따른 이해득실과 맞물려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향후 진전 상황에 따라 돌발적인 형태로 강화될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WTO, OECD, ISO 등의 국제기구에 의한 논의와 영향, 200여종에 이르는 개별적인 환경협약, 각국의 환경기준에 따른 영향 등이 부분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체에서는 WTO/OECD, ISO 등의 국제기구에 의한 압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국제협약의 내부수용에 환경기준의 강화, 국제무역시의 개별국가의 환경과 연계된 무역조치에 의한 규제 등의 영향이 나타나겠고, 또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환경문제가 수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국제환경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의 수혜를 누려왔으나 OECD가입 등에 따라 국제사회는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당사국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각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류업체에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더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 규제에 견디나가기 위해서 주류업체에서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환경 실행목표를 정리하면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폐기물 재자원화

이미 일본, 유럽 등의 맥주공장에서는 상당

수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약 20~30종의 폐기물에 대하여 100%재활용,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수십 종에 이르지만 그 물량이 소량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종별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공동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절약의 추진

연료, 전력, 용수의 사용 원단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코제너레이션, 빙축열, 히트펌프 등을 이용한 열·전력의 토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여과, 활성탄의 흡착, 막처리, 오존처리 등을 통한 세정용수의 클로즈드시스템(Closed System)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온실효과 가스의 억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일정 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완전 Non-CFC공장의 실현, 암모니아흡수식 냉동시스템의 도입, 염기성배수처리에서 얻은 메탄가스를 유효이용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을 도입한다.

(4) 용기 리사이클의 촉진

지속적인 용기의 재사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오염 용기의 개발, 알루미늄 캔의 리사이클 촉진, 용기포장의 경량화, 감량화 등을 수행한다.

(5) 환경관리시스템의 총실

국제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1을 취득하고, 전공장의 환경감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류업체에

서도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동지침으로는 ①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보전을 고려한 상품개발과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 기업활동을 통한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리사이클 추진에 노력하여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으로 환경보전을 추진한다. ③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생의 자세를 취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가한다. ④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사내체제의 정비와 사원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위해서 주류업체는 공동으로 21세기 환경친화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관련 규제와 영향은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이 이미 초임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환경 활동이 단지 비용증대의 측면이 아니고 환경친화적 경영이 향후에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우위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He who has health has hope, and he who has hope has everything

건강한 사람은 희망을 가졌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 아라비아 속담 -